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5,541호 1998. 5. 25

주요 골자

- 가.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됨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영·영리업무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함(법 제14조제1항 및 부칙 제1호 단서).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던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재산과 적립금외에 정부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3조).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영·관리업무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공공차관을 전대받아 신용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

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

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기금”을 “보증기금”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금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에의 예탁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재산
2. 적립금
3. 보증기금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

제4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제3조제1항, 제4조, 제15조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전단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신용보증총액 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전대받는 것에 대하여 전대받는 금액을 상환하는 때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영리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행한 계약·징수·조치 기타의 행위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지 기타의 행위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주택회보